

부산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345953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7,337,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2020. 1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0. 11. 30.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0. 2.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20. 2. 19. 접수 제35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권리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40%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B 부분: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C 부분: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0. 2.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20. 2. 19. 접수 제35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와 사이의 '물품공급(제조/구매 계약) 및 우레탄 도장기 물품 제조/가공/구매/납품' 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보험금액	피보험자	보험기간
2019. 10. 11.	85,000,000원	E	2019. 10. 11. ~ 2019. 11. 30.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E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함)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는 연 9%)을 부담하기로 되어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E에게 납기일인 2019. 11. 30.까지 계약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고, E는 2020. 2. 19. 피고 B에게 '우레탄 도장기 납기 지연건(긴급요청)'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였다.

라. 피고 B은 2020. 2. 19.에 E에게 그 이행을 거절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E는 2020. 4. 2.경 피고 B에게 이는 공사 진행의 거절이므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피고 B은 2020. 4. 20. E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E는 2020. 9.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10. 22. E에게 보험금으로 67,337,662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20. 2. 19.에 자신의 배우자의 언니인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함)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함)를 마쳤다.

사. 피고 B은 2021. 1. 28.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2021개회1276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E에 지급한 보험금 67,337,662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0. 23.부터 2020. 1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1. 30.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허위의 대여금 채권자이므로(설령, 피고가 진정한 대여금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인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B의 주장 포함)

B은 피고의 막내 여동생(F)의 남편이다. 피고는 2014. 11. 18. F에게 생활자금 용도로 10,000,000원을, 2017. 4. 10. B에 신축공사대금 용도로 10,000,000원을 이체하여 B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피고는 B으로부터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받고 2020. 2.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B에게 같은 달 20. 10,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원과 8,500,000원, 같은 달 22. 1,5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사고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피고는 B이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B이 운영하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20. 2. 19. 체결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20. 10. 22. E에

보험금으로 67,337,662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2019. 10. 11. B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이 2019. 11. 30.경 E에 대한 물품 납품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20. 10. 22. 원고가 E에 실제로 67,337,662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B에 대한 67,337,662원의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참조).

나) 갑 제6호증, 을 제11, 12,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18. F에게 10,000,000원을, 2017. 4. 10. B에 10,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B 부부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는 B의 요청으로 B에게 사업자금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위 기존의 대여금 채권과 장차 대여할 추가 대여금 채권을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2020. 2. 19.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위 2014. 11. 18.자 송금 및 2017. 4. 10.자 송금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변제되었고, 피고의 B에 대한 위 2020. 2. 20.자 송금, 같은 달 21.자 송금, 같은 달 22.자 송금은 진정한 대여금 채권이 아니라 장차 있을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허위로 대여금 채권의 외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와 사이에서 추가적인 사업자금의 유통을 위해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B에게 대여한 합계 30,000,000원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이를 초과하여 그 이전에 대여한 합계 20,000,000원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선의 여부

채무자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권리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판사 최규현

별지